

20_빅데이터로 진화하는 미래 산업-마이데이터

#1

1. 마이데이터(MyData)

가. 개념

마이데이터란,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지에 흩어진 개인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스스로 본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정보를 개인에게 위임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관리하는 것부터 신용평점과 재무관리까지 지원합니다. 따라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허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나. 활용 배경

2021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 금융, 공공, 교통, 생활, 소상공인의 6개 분야에서 8개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을 통칭합니다.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신용조회업에 대해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시장에 대한 진입 규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해 비금융전문CB와 정보조회업의 최소 자본금을 5억으로 낮추어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IT 기업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3

2.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데이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관점과 기업의 관점입니다. 마이데이터 개념이 정립되면 금융 소비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업은 개인의 동

의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받고 맞춤형 자산 관리를 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가. 기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용 전망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투명성, 신뢰성, 통제권, 가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공통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모델을 통해 개인 데이터 흐름과 공통 요구 사항 적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공통 요구 사항은 동의, 제공, 이용 내역 관리 등 개인 데이터의 활용 프로세스별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개인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통합 및 조회하고, 맞춤형 금융 상품에 대해 자문하거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금리 인하요구권의 대리 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5

나. 금융 소비자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① 자산 관리 서비스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금융 소비자는 은행, 증권사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분석된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를 일괄 수집하여 정보 주체인 금융 소비자가 알기 쉽게 통합한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일괄 수집된 개인의 금융 정보를 기초로 신용도, 재무 위험, 소비 패턴과 같은 개별 소비자의 재무 현황을 분석하여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② 간편한 신용 관리 및 정보 관리

금융 소비자의 신용 관리 및 정보 관리도 쉬워집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 소비자의 재무 현황을 기초로 신용 상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금융 소비자를 대신해 신용조회사

나 금융회사 등에 긍정적 정보를 제출하고 부정적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정보 관리 업무까지 대행합니다.

#6

③ 최적화된 금융상품 추천

개별 금융 소비자별로 현재 신용 상태, 재무 현황 아래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 상품 목록을 제시합니다. 또 상품의 가격이나 혜택을 상세하게 비교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 상품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개인의 신용 상태를 생각해 최저 금리 대출 상품을 추천해주거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최고 혜택 카드 상품을 추천해주는 식입니다.

#7

다.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① 은행

- 계좌거래 내역, 대출 잔액, 금리 및 이자 등의 다양한 금융자산 현황 등을 분석합니다.
- 저축 및 재테크 방안 안내 등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② 카드

- 카드의 사용 일시, 결제 내역, 카드대출 이용 등의 소비 패턴을 분석합니다.
- 다양한 카드 사용의 혜택 제공 및 합리적인 소비 습관의 개선을 지원합니다.

③ 금융 투자

- 투자 종목, 투자 금액, 자산 규모 등의 투자 정보를 통해 투자 패턴을 분석 합니다.
- 세제 혜택, 투자 습관의 개선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8

④ 보험

- 보험료의 납입 내역, 보험 기간, 보장 내역 등의 보험 정보를 통해 노후를 예측하고 건강 상태를 분석합니다.
- 연금 관리를 통한 노후 설계와 저비용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핀테크

-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업권의 금융 상품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 맞춤형 금융 상품의 추천 및 정보 주체의 정보 권리 행사를 대행합니다.

⑥ IT

- 금융, 통신, 유통 등의 데이터와 융·복합합니다.
- 통신 정보 기반의 금융 상품, 유통 정보 기반의 금융 상품 등 고부가가치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라. 신용 및 금융 정보의 범위

금융 당국과 유관 기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은 ‘マイ데이터 ウォッチリスト’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신용 및 금융 정보의 범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업권 간 이견 등으로 제공의 대상이 아니었던 은행 계좌 적요, 보험 보장 내역, 카드 가맹점 정보 등도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카드 청구 예정 정보 등으로 제공 정보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10

질문자: 표준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나요?

전문가: 표준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표준화된 규격으로 사용자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보안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기존의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은 사용자가 본인인증을 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별로 각 기관에 정보를 요청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11

3. 데이터 3법

가. 의의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을 통칭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에 따라 나뉘어 있어 중복

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2020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가명 정보 개념의 도입 및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한 목적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가명 정보를 이용할 때의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 정보의 관리 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규제 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 「신용정보법」: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용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인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금융 분야의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신용 주체자의 본인 정보 통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12

나. 주요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그동안 폭넓게 정의되어 온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고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통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으며, 익명정보나 가명정보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에도 정보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의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② 마이데이터 도입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도 마이데이터 활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

③ 개념 및 활용 가능 범위

⑦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는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⑧ 가명정보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입니다. 상업적 목적 포함한 통계 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모든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에 관련된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⑨ 익명정보

익명정보란,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치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